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(민형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690 발의연월일: 2025. 1. 21.

발 의 자:민형배·이개호·김성환

문정복 • 박지원 • 김문수

안도걸 • 전진숙 • 조계원

김영환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부동산교부세 재원 확충을 위해 기존 종합부동산세에 내국세 총액의 1%를 추가하고자 합니다.

현재 부동산교부세는 지방교부세 중 하나로, 정부가 거둬들인 종합부동산세 전액이 지자체로 교부됩니다.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등장과 함께 2023년부터 부동산 감세 정책으로 부동산교부세가 급감합니다. 특히 자치구의 경우 보통교부세 미교부 단체로 부동산교부세 의존도가높습니다. 기초자치단체는 사회복지비 등 지방비 부담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, 세수는 오히려 감소해 재정 압박이 심각한 상황입니다. 정부 정책과 복지 수요에 맞춘 지방비 대응을 위해 추가 재원 확보가시급합니다.

이에, 기존 부동산교부세 재원에 내국세 총액의 1%를 추가하고자합니다. 지방재정 건전성 유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입니다

(안 제4조).

법률 제 호

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교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제2호 중 "총액"을 "총액 및 해당 연도의 내국세 총액의 1 만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"정산액"을 각각 "정산액 × 2,024분의 1,924"로 하며, 같은 항 제4 호 중 "제1항제2호의 금액"을 "제1항제2호의 금액 + 제1항제4호의 정 산액 × 2,024분의 100"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교부세의 재원에 관한 적용례)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26년도에 교부하는 교부세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4조(교부세의 재원) ① 교부세	제4조(교부세의 재원) ①		
의 재원은 다음 각 호로 한다.			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		
2. 「종합부동산세법」에 따른	2		
종합부동산세 <u>총액</u>	<u>총액 및 해당</u>		
	연도의 내국세 총액의 1만분		
	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		
3. ~ 6. (생 략)	3. ~ 6. (현행과 같음)		
② 교부세의 종류별 재원은 다	②		
음 각 호와 같다.			
1. 보통교부세: (제1항제1호의	1		
금액 + 제1항제4호의 <u>정산액</u>)	<u>정산액</u>		
× 100분의 97	× 2,024분의 1,924		
2. 특별교부세: (제1항제1호의	2		
금액 + 제1항제4호의 <u>정산액</u>)	<u>정산액</u>		
× 100분의 3	× 2,024분의 1,924		
3. (생 략)	3. (현행과 같음)		
4. 부동산교부세: 제1항제2호의	4 <u>제1항제2호의</u>		
<u>금액</u> + 제1항제5호의 정산액	금액 + 제1항제4호의 정산액		
	× 2,024분의 100		
5. (생략)	5. (현행과 같음)		